

「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4. 19. 개정 판 (시행 2021. 2. 22.) → 2022. 2. 14. 개정 판 (시행 2022. 3. 1.)

바뀜 2 · 신설 2 · 삭제 1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90/compare?from=1164&to=1292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7:34:08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승진)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, 교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 및 임용보고에 필요한 연구실적, 근무년수, 업적평가 평균 80점 이상, 교수법 이수제도 이수 그리고 해당자인 경우 성경학점(18학점)이수, 재림연수원 과정 수료, 교육이념구현자술평가 등에 관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2-09-01> ① <삭제 2021-02-22> ② <삭제 2021-02-22> ③ <삭제 2018-01-17> ④ <외국인의 임용 및 승진> 외국인의 경우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와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추면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 단, 차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심사의 경우는 국내 교원승진규정에 준한다. <개정 2008-08-18>	제9조(승진) 교원의 승진은 조교수 및 부교수가 각각 차상위 직급에 승진함을 말하며, 심사절차 및 방법 등 <u>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으로 정한다.</u> <개정 2012-09-01> ① <삭제 2021-02-22> ② <삭제 2021-02-22> ③ <삭제 2018-01-17> ④ <삭제 2022-02-14>
<신 설>	제9조의2(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승진)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 <개정 2008-08-18>
<신 설>	제9조의3(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 및 승진)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2-02-14>
제20조(휴직기간)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.	제20조(휴직기간)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. 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22-02-14> 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,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 <신설 2022-02-14>
제28조(승진기간조정) 채용 시 과거의 경력이 지나치게 손실을 보았을 경우 교회와 국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승진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	제28조 삭제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규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교원인사 규정 시행세칙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외국인 교원의 임용 및 승진) 외국인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3(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 및 승진) 특성화트랙 교원의 임용과 승진에 관한 세부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0조(휴직기간) ① 교원의 휴직 기간은 정관 제45조에 의한다.

② 휴직기간은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③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교원의 경우, 적어도 임용기간이 1학기이상 남았을 경우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2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